

#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441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8. 5.

발 의 자 : 김현정 · 손명수 · 문금주  
박홍배 · 안도걸 · 이훈기  
양부남 · 복기왕 · 박상혁  
이강일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상법」에 따르면 전자주주명부의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이며,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도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.

이에 따라 주주가 다른 주주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워 주주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,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,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소집 및 안내를 활성화하고,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165조의21 신설).



##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편 제3장의2에 제165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5조의21(전자주주명부 작성에 관한 특례) ① 주권상장법인은 「상법」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주주와 채권자는 제1항의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 전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주주명부의 작성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| 개            정     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   설&gt;</u> | <p><u>제165조의21(전자주주명부    작성에 관한 특례) ① 주권상장법인은 「상법」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주주와 채권자는 제1항의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 전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주주명부의 작성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|